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9나481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9나4818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8가단512097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원고승계참가인 I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기현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변론 종결 2020. 6. 16.

판결 선고 2020. 7. 7.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8가단512097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C, 피고, D,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7. 접수 제403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 접수 제824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승계참가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는데 원고와 동일한 청구를 구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3호증을 사실인정의 증거로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3면 16행과 1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

원고는 2019. 8. 29.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였고, 그 무렵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채권양도가 무효인지 여부

피고는, 원고의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바, 위 채권양도의 무효 여부는 채권자대위권을 주장하는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소의 적법 여부와 모두 연관되므로 이에 대하여 선결적으로 검토한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 등 참조).

우선 원고가 제1심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한 후인 2019. 8. 29.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4, 15, 16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특히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년경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으며, 그 대가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점,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 사이에 친족관계 등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9. 8. 29.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원고에게는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망인과 그 딸인 피고가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것이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면 4행부터 8면 4행까지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아가 망인의 상속인들이 청구한 인천가정법원 2016느단10350 상속한정승인 사건의 심판문(2016. 12. 1.자) 별지 상속재산목록에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의무가 망인의 소극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3호증), 피고는 망인에게 금전 등을 대여 내지 양도한 대가로 망인과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금융자료 등도 있는 점(을 제6호증, 제10호증의 1, 2, 3) 등을 고려하면, 망인과 피고가 모녀 지간인 사실(원고는 그 외에 별다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제시하는 대법원 1963. 11. 28. 선고 63다493 판결과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다226 판결은 아무런 대가 없이 또는 특별한 사정 없이 부동산을 (동거하는)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매도하였다는 사례로서 모두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진원

판사유동균

판사윤동연

별지